



제 418회 국회 (정기회)
제16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전파차단장치의 사용 범위에 군사활동 및 대테러활동과
관련된 교육·훈련·장비정비 등의 활동 추가〉

■ 임종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3413호)

2024. 11.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건오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전파차단장치의 사용 범위에 군사활동 및 대테러활동과 관련된 교육· 훈련·장비정비 등의 활동 추가	2
※ 신고제 관련 유사입법 사례	9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임종득의원 등 11인

나. 발의연월일 : 2024. 8. 30.

다. 회부연월일 : 2024. 9. 2.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통합방위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등에 따른 국가안전보장 목적의 군사활동,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대테러활동 등 공공안전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제1호에 따른 드론 및 폭발물 등 공공안전 위협 수단을 대상으로 전파이용을 방해 또는 차단하는 장치(이하 “전파차단장치”라 함)를 사용하는 것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드론 테러 위협 증가로 비물리적 타격수단인 전파차단 장치의 전력화가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고, 군사활동 자체뿐만 아니라 군사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교육·훈련·장비정비 등의 목적으로도 전파 차단장치를 운용하여야 할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현장의 수요를 반영하여 전파차단장치의 사용 허용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전파차단장치의 사용이 가능한 경우로 군사활동 및 대테러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교육·훈련·장비정비 등의 활동을 추가함으로써 공공안전을 위한 전파차단장치의 사용 가능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29조제3항).

Ⅲ. 검토의견

1. 전파차단장치의 사용 범위에 군사활동 및 대테러활동과 관련된 교육·훈련·장비정비 등의 활동 추가

가. 개정안 요지

- 공공안전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로서 국가안전보장 목적의 군사 활동 및 대테러활동과 관련된 교육·훈련·장비정비 등의 활동에 대해 드론 및 폭발물 등의 공공안전 위협수단을 대상으로 전파이용을 방해 또는 차단하는 장치(이하 “전파차단장치”라 함)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29조제3항).

나.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9조(혼신 등의 방지) ① · ② (생략)	제29조(혼신 등의 방지)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공안전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활동 또는 조치 등의 범위에서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	③ ----- ----- ----- ----- ----- -----

현행	개정안
제1항제1호에 따른 드론 및 폭발물 등 공공안전 위협 수단을 대상으로 전파이용을 방해 또는 차단하는 장치(이하 “전파 차단장치”라 한다)를 사용할 수 있다.	----- ----- ----- -----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통합방위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등에 따른 국가안전보장 목적의 <u>군사활동</u>	2. ----- ----- ----- <u>군사활동 및 이와 관련된 교육·훈련·장비정비 등의 활동</u>
3.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2조제6호에 따른 <u>대테러활동</u>	3. ----- ----- ----- <u>대테러활동 및 이와 관련된 교육·훈련·장비정비 등의 활동</u>
4. ~ 6. (생략)	4. ~ 6. (현행과 같음)
④ ~ ⑦ (생략)	④ ~ ⑦ (현행과 같음)

다. 검토사항

- 현행법 제29조제3항에¹⁾ 따르면 ① 공공안전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로서 ② 안전활동, 군사활동, 대테러활동, 위반행위의 제지, 물리적방호 등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활동 또는 조치 등의 범위에서 ③ 드론 및 폭발물 등 공공안전 위협 수단을 대상으로 전파차단장치를 사용할 수 있음. 즉 현행법은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전파차단장치 사용이 가능함.
- 개정안은 이 중 두 번째 조건에 교육·훈련·장비정비 등의 활동을 추가한 것임. 최근 드론 테러 위협의 증가로 비물리적 타격수단인 전파차단장치의 전력화가 확대되고 있고, 군사활동 자체뿐만 아니라 군사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교육·훈련·장비정비 등의 목적으로도 전파차단장치를 운용하여야 할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현장의 수요를 반영하여 전파차단장치의 사용 허용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개정안의 취지는 공감할 수 있음.

1) 「전파법」 제29조(혼신 등의 방지) ① 전파자원은 혼신·간섭 등을 일으켜 타인의 전파이용을 방해 또는 차단하지 않도록 이용되어야 한다.
② 무선국은 다른 무선국의 운용을 저해할 혼신이나 그 밖의 방해를 하지 아니하도록 운용하여야 한다. 다만, 제25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통신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공안전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활동 또는 조치 등의 범위에서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드론 및 폭발물 등 공공안전 위협 수단을 대상으로 전파이용을 방해 또는 차단하는 장치(이하 “전파차단장치”라 한다)를 사용할 수 있다.
1.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에 따른 안전활동
2. 「통합방위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등에 따른 국가안전보장 목적의 군사활동
3.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대테러활동
4. 「공항시설법」 제56조제7항에 따른 위반행위의 제지
5.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물리적방호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와 관련하여 행하여지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위협 발생의 방지 또는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범죄의 예방과 제지를 위한 활동

- 다만, 개정안 제29조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군사활동 및 대테러 활동과 관련된 교육·훈련·장비정비 등의 활동을 추가하더라도 세 번째 조건인 “공공안전 위협 수단 대상”은 충족하지 못해 개정안의 입법취지가 달성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어 보임.
- 이와 관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파차단장치의 사용 가능 범위를 확대(교육·훈련·장비정비 추가)하여 드론 공격 등에 대한 국가의 대응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하면서, 입법취지의 달성을 위해 다음과 같은 수정수용 의견과 함께 조문 내용을 명확히 하여 수범자의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추가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음.
 - 전파차단장치의 사용 가능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개정안 제29조제3항 각호를 수정하는 것이 아닌, 현행법 제29조제4항을 신설하여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활동 또는 조치를 위한 교육, 훈련, 장비정비 또는 시험을 목적으로 전파차단장치를 사용하려는 자는 전파차단장치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로 수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임.
 - 또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신고를 받은 계획이 적합한 경우 신고를 수리하고 신고인에게 통보하도록 관련 규정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개정안에 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수정의견>

현행	개정안	과기정통부 수정안
제29조(혼신 등의 방지) ①·② (생략)	제29조(혼신 등의 방지) ①·② (현행과 같음)	제29조(혼신 등의 방지)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공안전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활동 또는 조치 등의 범위에서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드론 및 폭발물 등 공공안전 위협 수단을 대상으로 전파이용을 방해 또는 차단하는 장치(이하 “전파차단장치”라 한다)를 사용할 수 있다.	③ ----- ----- ----- ----- ----- ----- ----- ----- ----- ----- ----- ----- ----- ----- --.	③ (현행과 같음)
1. (생략)	1.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통합방위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등에	2. 「통합방위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등에	2. (현행과 같음)

다른 국가안전보장 목적의 <u>군사활동</u>	다른 국가안전보장 목적의 <u>군사활동 및 이와 관련된 교육· 훈련·장비정비 등의 활동</u>	
3. 「국민보호와 공 공안전을 위한 테러 방지법」 제2조제6호 에 따른 <u>대테러활동</u>	3. 「국민보호와 공 공안전을 위한 테러 방지법」 제2조제6호 에 따른 <u>대테러활동 및 이와 관련된 교육 · 훈련·장비정비 등 의 활동</u>	3. (현행과 같음)
4. ~ 6. (생략)	4. ~ 6. (현행과 같 음)	4. ~ 6. (현행과 같 음)
<u><신 설></u>		④ 제3항 각 호에 해 당하는 경우로서 그 활동 또는 조치를 위 한 교육, 훈련, 장비 정비 또는 시험을 목 적으로 전파차단장 치를 사용하려는 자 는 전파차단장치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과 학기술정보통신부장 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u><신 설></u>		⑤ 과학기술정보통신

		<u>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계획이 이 법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고를 수리하고 그 사실을 신고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u>
④ ~ ⑥ (생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⑥ ~ ⑧ (현행 제4항부터 제6항까지와 같음)
⑦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신고와 인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현행과 같음)	<u>⑨ 제4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신고, 제7항에 따른 인가에 관한 절차 등 필요한 -----</u> <u>-----.</u>
제71조의2(조사 및 조치) ① ~ ④ (생략)	제71조의2(조사 및 조치) ① ~ ④ (현행과 같음)	제71조의2(조사 및 조치)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시험결과 위반 사실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그 시설자, 제조·수입·판매·대여하는 자, 판매·대여할 목	⑤ (현행과 같음)	⑤ ----- ----- ----- ----- ----- ----- ----- -----

적으로 진열·보관·운송하거나 무선국·방송통신망에 <u>설치하는 자에게</u> 개선·시정·수거·철거·파기 또는 생산중지·수입중지·판매중지·사용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 ----- <u>설치하는 자, 전파차단장치</u> <u>를 사용하는 자에게</u> ----- ----- ----- ----- ----- ----- ----- -----.
⑥ (생략)	⑥ (현행과 같음)	⑥ (현행과 같음)

※ 신고제 관련 유사입법 사례

「공연법」 제11조(재해예방조치) ① <u>공연장운영자는 화재나 그 밖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그 공연장 종업원의 임무·배치 등 재해대처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신고받은 재해대처계획을 관할 소방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u> ② <u>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전단에 따라 신고를 받은 재해대처계획을 검토하여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된 재해대처계획의 내용이 미흡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u> ③ 제2항 후단에 따라 재해대처계획의 보완을 요구받은 공연장운영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 보완하여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다시 신고하여야 한다.

제33조(행정처분)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공연 활동 또는 공연장 운영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제5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2.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 제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4. 제9조를 위반한 자
5. 제11조제1항 전단, 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한 자

5의2. 제11조에 따른 재해대처계획에 따라 필요한 재해예방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

5의3. 제11조의7에 따른 방화막을 설치하지 아니한 자

6. 제12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

7. 그 밖에 제40조제1호·제2호 또는 제41조제2호·제6호에 규정된 죄를 지어 형을 선고받고 3개월 이내에 같은 위반행위를 한 자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5조(분양신고) ① 분양사업자는 건축물을 분양하려는 경우에는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허가권자(이하 “허가권자”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분양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분양신고를 할 때에는 신탁계약서, 대리사무계약서, 대지의 등기사항증명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권자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한 서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허가권자는 분양신고의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한 경우에는 분양신고를 수리(受理)하고 그 사실을 분양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분양방법 등) ① 분양사업자는 제5조제3항에 따른 분양신고의 수리 사실을 통보받은 후에 분양 광고에 따라 분양받을 자를 공개모집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인터넷을 활용하여 분양받을 자를 공개모집하여야 한다.

제9조(시정명령) ① 허가권자는 분양사업자의 분양 광고의 내용이 제5조제3항에 따라 수리된 분양신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제6조제2항에 따른 사항을 포함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즉시 분양사업자에게 시정을 명하고, 그 사실을 해당 허가권자가 운영하는 정보통신

망에 공표하여야 한다.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산림경영 교육·훈련등 지원) ①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임업소득 증대 및 산림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임업인 또는 산림경영을 하려는 자를 대상으로 임업소득 증대 및 산림경영에 관한 교육·훈련 및 상담·자문·지도(이하 “교육·훈련등”이라 한다) 업무의 지원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산림청장은 교육·훈련등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절차에 따라 교육·훈련등을 전문적으로 실행하는 기관(이하 “전문교육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산림청장은 교육·훈련등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전문교육기관이 교육·훈련등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산림청장에게 교육·훈련등 프로그램을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9조의3(전문교육기관 지정의 취소 등) ① 산림청장은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교육과정을 개설하지 아니하거나 2년 이상 전문교육기관을 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
4. 제9조의2제4항에 따라 신고한 교육·훈련등 프로그램과 다르게 운영한 경우

문 의 처

02)6788-5228